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공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부동산과 관련된 제3자용 사본

세금 및 수도 유치권 공매 의향에 대한 90일 고지

2016년 2월 10일

부동산 주소

보로 블록 구역

사건 번호

상기 언급된 부동산과 관계가 없다면 아래의 쿠폰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기록에 의하면 귀하는 부동산 제세금, 수도 및/또는 하수 요금과 기타 부동산 관련 부과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0**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금은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서 아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미납 부과금을 [날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가 권한을 가진 매입자에게 채무를 공매하게 됩니다. **채무가 공매되면 아래의 금액에 이자 및 행정 수수료로서 5%의 금액이 추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유치권 금액	\$0 ([날짜] 기준)
부동산 관련 부과금 유치권 금액	\$0 ([날짜] 기준)
긴급 수리 부과금:	\$0 ([날짜] 기준)
DOF가 청구한 수도 유치권 금액	\$0 ([날짜] 기준)
수도 위원회 유치권 금액	\$0 ([날짜] 기준)
유치권 총액:	\$0

소유하신 부동산이 공매되지 않도록 하려면 **까지** 납부금을 납부하거나 [날짜] **까지 납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지 B1 과 B2를 참조하십시오.

고령자, 재향군인(또는 재향 군인의 친척) 또는 **장애인**의 경우, 내년부터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가 공매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또는 현역 군인의 친척)이거나 2015 과세연도에 거래 일시 중지 공제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공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B5의 «면제 자격 점검목록»을 참조하십시오.

nyc.gov/payonline에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납부금에 이 쿠폰 원본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날짜]까지 납부할 금액 \$0

납부한 금액: \$

납부 주소:
NYC Department of Finance
P.O. Box 680
Newark, NJ 07101-0680

보로, 블록 & 구역:



세금 및 수도 유치권 공매 의향에 대한 90일 고지

온라인 납부는 nyc.gov/payonline에서 온라인 자금 이체(무료), 전자 수표(수수료 \$2) 또는 직불카드나 신용카드(수수료 2.49%)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는 다음의 장소에 위치하는 재무부 업무 센터(Department of Finance Business Center)(평일 오전 8:30 - 오후 4:30)에서 현금, 은행 수표, 개인 수표 또는 머니 오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Bronx3030 Third Avenue - 2층
- Brooklyn.....210 Joralemon Street - 1층
- Manhattan.....66 John Street - 2층
- Queens144-06 94th Avenue - 1층
- Staten Island.....350 St. Marks Place - 1층

미국 연방법 11편("파산법")에 따른 파산 사건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또는 부동산에 관한 특별 고지

여기에 명시된 유치권의 공매는 세금 징수 행위가 아닙니다. 해당 유치권의 매입자인 Delaware 신탁(«매입자»)은 파산 법원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소유자 및/또는 부동산이 파산법에 명시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에는 유치권에 대한 징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한법»). 제한법에는 5%의 추징금, 법정 이자율 증가분, 통지 비용, 모든 벌금, 또는 해당 사법적 구제를 먼저 받지 않고 압류 행위나 기타 법적 방법으로 유치권을 집행하는 법률 등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평가 가치가 \$250,000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 이자는 연리 9% 기준으로 날짜 별 복리로 계산하여 가산됩니다. 평가 가치가 \$250,000를 초과하는 부동산의 경우, 이자는 연 복리 18%로 계산합니다. 파산 세금 유치권의 공매로 인해 시작되는 기간에는 관련 부동산 소유자가 파산 상태인 동안에 징수됩니다. 매입자는 해당 소유자 및/또는 부동산이 파산법에 명시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후 모든 법적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보로, 블록 & 구역:



이 상자를 체크함으로써 귀하는 향후 위에 열거한 부동산에 관한 고지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고지를 수령하지 않으려는 경우, 쿠폰을 잘라서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에 표시된 해당 보로, 블록 및 구역별 부동산에 관한 고지의 수령을 원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TAXPAYER IDENTIFICATION
NYC DEPARTMENT OF FINANCE
59 MAIDEN LN FL 26
NEW YORK NY 10038-4502



2016년 유치권 공매 의향 고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지키십시오

유치권 공매란?

유치권은 미납된 재산세, 수도 요금, 하수 요금 또는 기타 부동산 부과금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해 취하는 법적 청구로서 세금 및 부과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가 포함됩니다.

공매는 유치권을 허가된 매입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며 제세금 및/또는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 소유자가 법원에서 압류 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고지가 의미하는 것은?

뉴욕시 기록에 귀하가 다음을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재무부(DOF)에 재산세 및 발생 이자를 납부, 및/또는
- 환경 보호부(DEP)에 수도 및 하수 요금과 발생 이자를 납부 및/또는
- 주택 보존 및 개발부(HPD)가 평가하고 재무부(DOF)가 청구하는 긴급 수리 프로그램(ERP) 또는 대체 집행 프로그램(AEP) 부과금과 발생 이자를 납부.

소유자가 해야 할 일?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공매를 방지하려면 채무를 **2016년 5월 11일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전체 채무액을 납부하거나, 납부 합의를 작성하거나, 현재까지의 미납금에 대한 납부 합의를 지참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으로 수표를 제출했으나 부도가 난 경우, 추가적인 고지를 수령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은 이 또는 나중 고지서에 명시된 유치권 공매 대상이 되거나 다음의 유치권 공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두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유치권은 아무나 매입할 수 있는가?

뉴욕시는 유치권을 허가된 단일 매입자에게만 공매하며 일반인에게 공매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매입에 대한 정보는 저희에게 문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납부 방법

모든 납부금은 5월 11일까지 수령해야 합니다.

부동산세 및 관련 부과금

온라인 납부는 온라인 자금 이체, 전자 수표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전자 수표 납부에 부과됩니다. 재무부(DOF)의 웹 사이트(nyc.gov/liensale)를 방문해 주십시오.

5월 2일까지 우편으로 납부 수표 또는 머니 오더의 수신인을 NYC Department of Finance로 하십시오. 해당 부동산의 보로, 블록 및 구역 번호(이 고지서 첫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음)를 메모 난에 적어 주십시오. 뉴욕시 수도 위원회에 대한 납부금과 재무부에 대한 유치권 납부금을 더해서 함께 납부하지 마시고, 별도의 수표를 사용해 주십시오. 봉투는 동일한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금이 ERP 또는 AEP와 같은 특정 부과금인지도 명시해 주십시오. 수신처:

NYC Department of Finance
P.O. Box 680
Newark, NJ 07101-0680

직접 납부 - 페이지 B2에 열거된 재무부(DOF) 사무소에서 현금, 은행 수표, 개인 수표, 머니 오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납부금을 시기 적절하게 처리하고 유치권의 공매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수표나 머니 오더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보로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 / 하수 요금

온라인 납부는 nyc.gov/dep에서 무료로 온라인 자금 이체를 통해 수도/하수 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nyc.gov/payonline에서는 신용카드/직불카드나 전자 수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고도 Quickpay(nyc.gov/dep)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 납부는 1-866-622-8292로 전화하여 무료로 온라인 자금 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까지 우편으로 납부. 수표 또는 머니 오더의 수신인을 NYC Water Board로 하십시오. 수도 계정 번호를 메모 난에 기입하여 다음으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NYC Water Board
P.O. Box 11863
Newark, NJ 07101-8163

직접 납부 - 페이지 B2에 열거된 재무부(DEP) 사무소에서 은행 수표, 개인 수표, 머니 오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납부금을 시기 적절하게 처리하고 유치권의 공매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수표나 머니 오더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보로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하수 요금은 재무부 업무 센터(DOF Business Center)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서는 요청할 경우 **벵골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이티크리올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도 제공 가능합니다. 311로 전화.**

납부 합의서

신규 납부 합의서 - 계약금 필요 없음

납부 합의서는 90일 유치권 공매 고지서에 포함된 부동산에 대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없습니다. 합의서의 기간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재무부(DOF)에 대한 합의서는 분기마다 청구되지만 원할 경우, 매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DEP에 대한 합의서는 매월 청구됩니다. 합의 내용에는 신규 제세금 및 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 11일까지 납부 합의서에 서명하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유치권 공매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도와 하수 요금에 대해 DEP와 합의서를 작성하려면 아래에 열거된 DEP 보로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사진이 있는 정부 발행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18) 595-7000로 문의하십시오.

재무부(DOF)와 재산세 및 관련 부과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nyc.gov/liensale에서 얻을 수 있는 납부 합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 정부 발행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311로 전화해 주십시오. 뉴욕시 외부에서 연락할 경우, (212) 639-9675로 전화해 주십시오. 기업, 납부 합의서에 서명한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위임장 또는 계약자가 기업의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납부 합의서를 작성한 부동산 소유자

2011년 또는 2015년 유치권 공매에 대해 고지를 받았고 납부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합의서는 최신 상태가 아닙니다(6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음). 2016년 5월 11일 최신 납부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납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유치권 공매에 대해 통지 받기 전에 재무부(DOF)나 DEP와 납부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재무부(DOF)나 DEP 기록에 미납된 납부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미납액을 납부하려고 하거나, 모든 납부금을 납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재무부(DOF) 또는 DEP로 연락해 주십시오. 신규 납부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이전 섹션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고객 지원

> 재산세

온라인: nyc.gov/liensale
이메일: taxlien@finance.nyc.gov
전화: 212-440-5408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노령자
옴부즈맨: 212-440-5407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직접 납부: 재무부(DOF) 업무 센터
모든 부과금을 여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8:30 - 오후 4:30

Bronx.....3030 Third Avenue - 2층
Brooklyn.....210 Joralemon Street - 1층
Manhattan.....66 John Street - 2층
Queens144-06 94th Avenue - 1층
Staten Island.....350 St. Marks Place - 1층

> 긴급 수리 및 대체 집행 부과금

온라인: nyc.gov/liensale
전화: 212-863-6020 -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이메일: hpderp@hpd.nyc.gov

> 수도 / 하수 요금

온라인: nyc.gov/liensale
전화: 718-595-7000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2시

직접 납부: DEP 보로 사무소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Bronx1932 Arthur Avenue - 6층
Brooklyn250 Livingston Street - 8층
Manhattan1250 Broadway - 8층
Queens...96-05 Horace Harding Exp - 1층
Staten Island60 Bay Street - 6층

> 수도 / 하수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

온라인: nyc.gov/liensale
이메일: ombuds@dep.nyc.gov
전화: 718-595-OMB (6628)

뉴욕시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공매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 조건이 4가지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을 이해하려면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마지막 열에 «예»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참고 2를 확인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공매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부동산의 종류	재산세 채무		수도/하수 요금 채무		AEP 채무		ERP 채무		대상에서 제외 여부 (참고 2)
	최소 금액	연체 기간(년)	최소 금액	연체 기간(년)	최소 금액	연체 기간(년)	최소 금액	연체 기간(년)	
1인 가구 주택	\$1,000	3	(참고 1)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예
2인 가구 주택	\$1,000	3	\$2,000	1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예
3인 가구 주택 - 소유자 거주	\$1,000	3	\$2,000	1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예
3인 가구 주택 - 소유자 비거주	\$1,000	3	\$2,000	1	\$1,000	1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아니요
주거용 콘도	\$1,000	3	\$1,000	1	\$1,000	1	\$1,000	1	예
공동 주거용 건물	\$1,000	3	\$1,000	1	\$1,000	1	\$1,000	1	아니요
택지로 구분된 공터	\$1,000	3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000	1	\$1,000	1	아니요
위에 아파트가 1-2가구 있는 소규모 매장 또는 사무실	\$1,000	3	\$2,000	1	\$1,000	1	\$1,000	1	예
주택개발자금 공사(HDFC) 임대 건물	\$5,000	2	\$5,000	2	\$5,000	2	\$5,000*	2	아니요
기타 모든 건물	\$1,000	1	\$1,000	1	\$1,000	1	\$1,000*	1	아니요

*2006년 1월 1일 이후 게시된 부과금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1: 1인 가구 주택을 소유하며 **수도 요금/하수 요금**만 부담하고 재산세는 부담하지 않는 경우, 뉴욕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공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도/하수에 대한 채무는 공매할 수 없지만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DEP가 수도/하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예외 규정: 해당 부동산이 1인 - 3인 가구 주택이거나 주거용 콘도일 경우,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 소유주가 다음 혜택 중 하나에 대해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지 않습니다.

- 노령자 주택 소유자 면제: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장애인 주택 소유자 면제: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장애인.
- 재향 군인 면제: «구법» 재향군인 면제의 대상일 경우, 해당 부동산을 미국 정부의 전쟁 포로 보상금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유치권 공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향 군인 면제의 «전쟁» 또는 «장애» 혜택은 유치권 공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의 종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nyc.gov/finance로 가서 부동산(Property)을 클릭하고 온라인 도구 아래에서 «면제 및 세금 경감 내역»을 클릭하십시오.

2014 과세연도에 뉴욕주 주택 소유자를 위한 부동산세 보조금(«거래 일시 중지» 공제액)을 받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현역 군인은 nyc.gov/liensale에 있는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유치권 공매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외 대상이라고 생각할 경우 신청서는 해당 웹 사이트(www.nyc.gov/taxreductionprogram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면제 신청서 접수마감은 2016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뉴욕시 유치권 공매 절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어떤 종류의 부채가 유치권 공매에서 매각되나요?

- 재산세
- 하수 또는 수도세, 추징금
- 긴급 수리 프로그램과 대체 집행 프로그램 부과금을 포함한 기타 부동산 관련 요금과 부과금
- 상기 모든 제세금과 부과금에 대한 발생 이자

■ 세금이나 부과금에 대한 분쟁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유치권을 공매할 수 있나요?

예. 부동산의 평가 가치나 기타 부과금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제세금이나 부과금 총액을 납부하거나 유치권 공매를 방지하기 위한 납부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분쟁이 해결될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이 매각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치권 공매로부터 90일 이내에 뉴욕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편을 통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 유치권 공매의 계약 조건
- 신규 유치권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 부동산 소유자가 연락할 수 있는 유치권 소유자의 승인된 대리인의 이름. 이 대리인은 납부 방식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편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뉴욕시가 새로운 세금이나 부과금을 청구하면 계속해서 뉴욕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뉴욕시에서 보낸 공문에 명시된 새로운 유치권 소유자나 이들이 승인한 대리인이 아닌 어떤 누구에게도 납부금을 지급하거나 상대해서는 **안됩니다**.

■ 공매로 인해 발생할 기타 부과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유치권이 매각되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유치권 공매에 포함된 제세금, 부과금 및 발생 이자를 뉴욕시가 아닌 새로운 유치권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할 금액은 유치권이 공매된 이후부터 증가합니다. 유치권 소유자는 다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유치권 금액에 대해 5%의 추징금
- 이자, 날짜 별 복리 계산하며 6개월마다 지급
- 유치권 공매와 관련된 행정 비용, 광고 및 고지 비용을 총당하기 위한 \$300 포함

■ 새로운 유치권 소유자는 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나요?

예. 해당 유치권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으나, 처음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유치권 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새로운 유치권 소유자와 납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압류는 유치권 공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유치권 소유자는 유치권 공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도 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자를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 유치권 금액을 전액 납부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제세금 또는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유치권 공매의 법적 근거

부동산에 대한 납부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것에 대한 세금 유치권의 공매는 뉴욕시 행정법 11-319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재무부(DOF)가 유치권 공매일로부터 90일, 60일, 30일, 10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세금 유치권 매각 증명서를 발송한지 90일 이내에 매각된 유치권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목록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유치권 공매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nyc.gov/finance 에 있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세금 혜택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311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고령자, 재향 군인, 현역 군인 및 장애인

1-3인 가구 주택 또는 주거용 콘도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사람

저희 기록에는 귀하가 납부할 재산세, 수도 요금 또는 EPR/AEP 부과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 2일까지 연락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는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공매할 수 있습니다.

노령자, 장애인 또는 재향 군인(또는 재향 군인의 친척)이거나 귀하 또는 친척이 현역 군인일 경우, 재산세 면제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채무가 매각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15 과세연도에 뉴욕주 주택 소유주 부동산세 환급(«거래 일시 중지»)을 받은 경우에도 귀하의 부동산은 공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뒷면의 점검목록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면제 대상이 될 경우, 유치권 공매 제외 신청서를 발송해드립니다. 귀하의 부동산을 유치권 공매에서 제외시키는 제외 신청을 하려면 유치권 공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세 면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311**로 전화해 주십시오(뉴욕시 외부 지역에서는 212-639-9675 이용).

마감일: 2016년 5월 2일 목요일

면제 자격 점검목록

작성 방법

1. 아래의 점검목록을 작성해 주십시오. 섹션 A의 양쪽 상자를 체크하고 섹션 B에서 하나 이상의 상자에 체크할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점검목록 작성을 마쳤으면 섹션 C를 작성하고 면제 자격 점검목록을 아래 주소로 발송해 주십시오.
3. 귀하가 노령자, 장애인 또는 재향 군인에 해당하거나 «거래 일시 중지» 공제액 또는 현역 군인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점검목록을 수령한 후 신청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4. 유치권 공매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점검목록은 면제 신청서가 아닙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면제 신청서가 아닙니다.**

섹션 A

본인은 해당 상자를 체크함으로써 다음을 증명합니다.

- 본인의 부동산은 1인 - 3인 가구 주택 또는 주거용 콘도입니다.
- 본인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며 주요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섹션 B

본인은 또한 다음을 증명합니다.

- 1951년 이전에 출생한 소유자 중 한 사람이며 전체 소유자의 총 소득은 \$37,400 미만입니다.
- 장애인 수당을 수령하는 소유자 중 한 사람이며 전체 소유자의 총 소득은 \$37,400 미만입니다.
- 소유자 중 한 사람이 현역 군인입니다.
-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재향군인(또는 재향군인의 배우자/여성독거자/남성독거자) 또는 Gold Star Parent입니다.
- 본인은 2015 과세연도에 뉴욕주 재산세 환급(«거래 일시 중지» 공제액)을 수령했습니다.

섹션 C

1. 소유자 이름: _____
2. 전화 번호: (_____) _____ - _____
3. 거리 주소: _____
4. 시: _____
5. 주: _____ 6. 우편번호: _____
7. 도로: _____ 블록: _____ 구역: _____
8. 이메일 주소(선택 사항): _____

**수신처: NYC Department of Finance, Lien Sale Exemptions Unit,
59 Maiden Lane, 24th Floor, New York, NY 10038.**

마감일: 2016년 5월 2일